

단국대학교

수 신 각 부서장

(경유)

제목 2019학년도 1학기 신·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 안내

- 1. 관련근거 :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 ⑥ 양영장학금
- 2.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신·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양영장학금
 - 1)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, 정규직원, 교직원,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, 정년퇴직·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중이었던 직계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함
 - 2) 대상
 - 가)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·정규직원
 - 나)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(특별교원·비정년트랙교원·임시직 제외)
 - 다) 단국공업고등학교·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·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
 - 라)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·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·의료원의 정규직원
 - 나. 장학금액 : 수업료 100%
 - 다. 신청절차 [※ 재학생 및 복학생 중 기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지급]

구분	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· 편입생
신청기간	2019. 3. 4.(월) ~ 3. 13.(수)
제출서류	①양영장학금 신청서[붙임] ②재직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
제출장소	< 학생 소속 캠퍼스 장학팀 > · 죽전 : 혜당관 423호 · 천안 : 학생회관 205-1호
지급방법	학생 명의 계좌 이체 [지급예정일 : 2019. 3. 29.(금)까지] 계좌입력방법 : 단국대 포털-웹정보-학사정보-학적관리-기본학적-신상정보

라. 장학생 선발기준

1) 신입생 및 편입생 :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.

2) 재학생 : 평균평점 2.5이상 [취득학점 12학점(4학년 6학점) 이상]

마. 연말정산: 양영장학금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, 교직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시 웹정보시스템 교육비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고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함.

붙임 양영장학금 신청서 1부. 끝.

학 생 처 장